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78 호 2017. 3. 14(화)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30호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231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남해군조례 제2232호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7
남해군조례 제2233호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11
남해군조례 제2234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남해군조례 제2235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조례 제2236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16호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8
--------------	-----------------------------	----

공 고

제2017 - 27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9
--------------	---------------	----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30호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를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함은” 을 “이란” 으로 한다.

제3조 중 “복지관” 을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관리)” 를 “(운영·관리)” 로 하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지관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한다.

제5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순위에 의한다” 는 “순서에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 을 “별표” 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로 한다.

제9조 중 “별표 2” 를 “별표”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운영기간중” 을 “운영기간 중”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가. 다목적홀 ○ 주간 ○ 야간	1회 2시간 1회 2시간	1회 30,000원 1회 40,000원	○ 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나. 소회의실 ○ 주간 ○ 야간	1회 2시간 1회 2시간	1회 10,000원 1회 20,000원	○ 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 5,000원 가산

※ 사용시간

- 주간 : 09:00~18:00(1월~2월, 11월~12월 09:00~17:00)
- 야간 : 18:00~22:00(1월~2월, 11월~12월 17:00~22:00)
- 다만, 처음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주간 요금을 징수한다.

남해군 조례 제2231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32호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를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로 한다.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조금 신청 축제의 심사 및 선정
2.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3. 축제의 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존속·폐지·축소 등의 심사
4. 축제 보조금 예산의 편성건의 및 집행점검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문화·예술·관광 및 경제 관계 유관기관·단체장
2.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관리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축제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33호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남해군 수급자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남해군 조례 제2234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법”을 각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원기상대장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 적
상주은모래비치	상주면 상주리 1248번지 일원	546,392m ²
송정솔바람해변	미조면 송정리 1124-1번지 일원	104,749m ²
두곡월포해수욕장	남면 당항리 535번지 일원과 석교리 50번지 일원	27,000m ²
사촌해수욕장	남면 임포리 1173번지 일원	13,000m ²
설리해수욕장	미조면 송정리 1007번지 일원	19,376.2m ²

남해군 조례 제2235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을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제12조제2항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36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에게”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명에 의하여”를 “명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에서”를 “제5조에 따라”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로, “금액이내”를 “금액 이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소재지내에서의”를 “소재지 내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을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은 별표 3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이라 함은 남해군내에서의” 를 “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이란 남해군 내에서의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 군내” 를 “남해군 내” 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16호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27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17. 3. 10.

2. 사유

가. 재등록 및 등록

- 인증기 신규 구입: 남해군수인민원실전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부발급용)
- 마모 및 분실로 인한 개각: 민원사무전용이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남면장인(인증기용)

나. 폐기

- 마모 및 분실로 인한 폐기: 민원사무전용이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남면장인(인증기용)
-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상 폐지된 회계관직(10개읍면 모두 해당):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의)인
- 국비재배정 회계종료
 - 건설교통부소관토지관리및지역개발특별회계경상남도남해군 분임재무관인
 - 건설교통부소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경상남도남해군 분임지출관인
-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조례 폐지(3.14 공포): 남해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출납원인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가.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인 민원실전용 (인증기용)	2.4cm 정방형	등록		민원봉사과

나. 등록 및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민원사무전용 이동면장인	2.1cm 정방형	폐기		이동면
	2.1cm 정방형	등록		
민원사무전용 남면장인 (인증기용)	2.1cm 정방형	폐기		사고(분실) 통보 (남면-288)호 남면
	2.1cm 정방형	등록		

다.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읍 분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폐기		남해읍
남해읍 분임경리관인	2.0cm 정방형	폐기		남해읍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남해읍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방형	폐기		남해읍
남해군이동면 분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폐기		이동면
남해군이동면 분임경리관인	1.5cm 정방형	폐기		이동면
남해군이동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이동면
남해군상주면 분임징수관인	2.1cm 정방형	폐기		상주면
남해군상주면 분임경리관인	2.1cm 정방형	폐기		상주면
남해군상주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상주면
남해군삼동면 분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폐기		삼동면
남해군삼동면 분임경리관인	1.6cm 정방형	폐기		삼동면
남해군삼동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삼동면
남해군미조면 분임징수관인	2.1cm 정방형	폐기		미조면

남 해 군 공 보

(22) 제 578 호

2017년 3월 14일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미조면 분임경리관인	2.1cm 정방형	폐기		미조면
남해군미조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미조면
남해군남면 분임징수관의인	2.0cm 정방형	폐기		남면
남해군남면 분임경리관인	1.6cm 정방형	폐기		남면
남해군남면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방형	폐기		남면
남해군서면 분임징수관의 인	2.0cm 정방형	폐기		서면
남해군서면 분임경리관인	1.6cm 정방형	폐기		서면
남해군서면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방형	폐기		서면
남해군고현면 분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폐기		고현면
남해군고현면 분임경리관인	1.4cm 정방형	폐기		고현면
남해군고현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고현면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설천면 분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폐기		설천면
남해군설천면 분임경리관인	1.5cm 정방형	폐기		설천면
남해군설천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설천면
남해군창선면 분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폐기		창선면
남해군창선면 분임경리관인	1.5cm 정방형	폐기		창선면
남해군창선면 일상경비 출납원의인	1.8cm 정방형	폐기		창선면
건설교통부소관토지 관리및지역개발특별 회계경상남도남해군 분임재무관인	2.1cm 정방형	폐기		재무과
건설교통부소관토지 관리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경상남도 남해군분임지출관인	2.1cm 정방형	폐기		재무과
남해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 기금출납원인	1.8cm 정방형	폐기		주민복지실